

순천대학교 학칙

제정 1982. 3. 1.	개정 1983. 9. 10.	개정 1983. 12. 16.
개정 1984. 2. 8.	개정 1985. 3. 19.	개정 1986. 3. 1.
개정 1986. 8. 21.	개정 1987. 6. 5.	개정 1988. 3. 1.
개정 1988. 8. 29.	개정 1989. 8. 11.	개정 1991. 3. 1.
개정 1992. 3. 1.	개정 1993. 3. 1.	개정 1993. 3. 31.
개정 1993. 9. 3.	개정 1994. 2. 19.	개정 1994. 12. 31.
개정 1995. 6. 21.	개정 1996. 3. 1.	개정 1997. 4. 9.
개정 1997. 10. 31.	개정 1999. 3. 5.	개정 2000. 7. 13.
개정 2000. 11. 22.	전면개정 2001.8.31.	개정 2002. 8. 31.
개정 2002. 12. 16.	개정 2003. 5. 23.	개정 2003. 9. 9.
개정 2003. 12. 9.	개정 2004. 2. 19.	개정 2004. 6. 7.
개정 2004. 6. 17.	개정 2005. 1. 5.	개정 2005. 3. 16.
개정 2005. 9. 1.	개정 2005. 12. 20.	개정 2006. 9. 19.
개정 2007. 1. 11.	개정 2007. 4. 1.	개정 2007. 4. 9.
개정 2007. 7. 4.	개정 2007. 9. 12.	개정 2008. 2. 13.
개정 2008. 4. 17.	개정 2008. 8. 21.	개정 2009. 2. 11.
개정 2009. 3. 16.	개정 2009. 12. 21.	개정 2010. 2. 24.
개정 2010. 9. 1.	개정 2011. 2. 28.	개정 2011. 6. 24.
개정 2011. 12. 30.	개정 2012. 4. 3.	개정 2012. 8. 29.
개정 2012. 11. 16.	개정 2013. 2. 15.	개정 2013. 8. 06.
개정 2013. 10. 16.	개정 2014. 02. 11.	개정 2014. 04. 29.
개정 2014. 09. 23.	개정 2014. 12. 24.	개정 2015. 03. 03.
개정 2015. 10. 15.	개정 2017. 2. 23.	개정 2017. 6. 13.
개정 2017. 7. 14.	개정 2018. 3. 13.	개정 2018. 3. 30.
개정 2018. 7. 4.	개정 2019. 3. 25.	개정 2019. 7. 17.
개정 2019. 10.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현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29.)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이 대학교는 진리, 창조의 정신으로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29.)

② 이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4. 29.)

1. 교양지식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
2. 세계화·정보화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3. 건전한 시민의식과 지도적 인격을 갖춘 인재 양성
4. 국가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제2장 학교조직

제1절 관리조직

제3조(총장) ① 총장은 이 대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이 대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12. 8. 29.)

② 총장임용후보자는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 29.)

제4조(처·국 조직) ① 이 대학교 본부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며,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7. 4. 1, 2007. 4. 9, 2010. 9. 1., 2017. 2. 23., 2018. 7. 4.)

②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교원 인사, 수업운영, 학사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9.1, 2012. 11. 16)

③ 학생처장은 학생 학술활동, 학생 복지, 학생 상담, 장학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9.1. 2012. 11. 16, 2017. 2. 23., 2018. 7. 4., 2019. 7. 17.)

④ 기획처장은 대학 운영에 관한 기획·조정, 성과관리 및 재정기획 업무를 관장하며, 정보화책임관으로서 정보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한다. (개정 2007. 4. 1, 2010. 9. 1., 2019. 3. 25., 2019. 7. 17.)

⑤ 사무국장은 국립학교설치령 제9조제2항 별표7의 업무를 관장한다.

⑥ 이 대학교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제5조(과 등 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과·학사지원과·교육과정지원센터, 학생처에 학생지원과·학생상담센터, 기획처에 기획조정과·재정기획실·성과관리센터를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재무과·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7. 4. 1, 2009. 3. 16, 2012. 11. 16, 2017. 2. 23., 2018. 7. 4., 2019. 3. 25., 2019. 7. 17.)

② 각 과·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9. 1, 2012. 11. 16, 2019. 7. 17.)

③ 각 과·실·센터의 분장 사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2. 11. 16, 2019. 7. 17.)

제5조의2(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의 산학협력, 연구비관리 및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산학협력과·연구진흥과를 둔다.. (신설 2010. 9. 1., 개정 2019. 7. 17.)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0. 9. 1.)

③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총장이 임면하고, 산학협력과장 및 연구진흥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0. 9. 1., 개정 2019. 7. 17.)

④ 총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1.)

⑤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9. 1.)

제5조의3(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① 이 대학교에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선도모델 창출과 확산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하 “LINC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신설 2013. 02. 15.)

② LINC사업단은 총장 직속으로 운영한다.(신설 2013. 02. 15.)

③ LINC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3. 02. 15.)

④ LINC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 02. 15.)

제5조의4(창업지원단) ① 이 대학교에 창업교육부터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성장 촉진에 이르는 창업지원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신설 2014.

12. 24.)

② 지원단은 총장 직속으로 운영한다.(신설 2014. 12. 24.)

③ 지원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4. 12. 24.)

④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 12. 24.)

제5조의5(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① 이 대학교에 학부 교육의 혁신과 지역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ACE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신설 2015. 10. 15.)

② ACE사업단은 총장 직속으로 운영한다.(신설 2015. 10. 15.)

③ ACE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5. 10. 15.)

④ ACE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 10. 15.)

제5조의6 삭제 <2019. 3. 25.>

제5조의7(생명윤리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총장 직속기구로 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신설 2017. 6. 13.)

② 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 6. 13.)

제5조의8(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 ① 이 대학교에 성인학습 친화형 학습 체제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을 둔다.(신설 2017. 7. 14.)

②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은 총장 직속으로 운영한다.(신설 2017. 7. 14.)

③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7. 7. 14.)

④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 7. 14.)

제5조의9(인권센터) ① 이 대학교에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총장 직속 기구로 둔다.(신설 2018. 3. 13.)

②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3. 13.)

제5조의10(입학본부) ① 이 대학교에 입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본부를 두고, 하부조직으로 입학지원실을 둔다.

② 입학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입학지원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8. 7. 4.]

제5조의11 삭제 <2019. 7. 17.>

제5조의12 삭제 <2019. 7. 17.>

제5조의13(대외협력본부) ① 이 대학교에 대외협력과 지역 기여 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외협력본부를 둔다.

② 대외협력본부는 총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③ 대외협력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대외협력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3. 25.]

제5조의14 삭제 <2019. 7. 17.>

제5조의15(전략기획단) ① 이 대학교에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에 대비한 각종 전략 수립을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둔다.

② 전략기획단은 총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③ 전략기획단장은 총장이 되고, 전략기획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전략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7.]

제5조의16(교육혁신본부) ① 이 대학교에 교육혁신 및 교육 질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교육혁신본부를 두고, 하부조직으로 교육질관리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대학혁신사업운영팀, 교육지원실을 둔다.

- ② 교육혁신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교육지원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혁신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7.]
- 제5조의17(인재개발본부) ① 이 대학교에 인재개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인재개발본부를 두고, 하부조직으로 취업지원실을 둔다.
- ② 인재개발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취업지원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인재개발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7.]

제2절 교육조직

제6조(단과대학) ① 이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을 둔다.

1. 생명산업과학대학 (개정 2008. 2. 13)
2. 사회과학대학 (개정 2008. 2. 13)
3. 인문예술대학 (개정 2008. 2. 13)
4. 공과대학
5. 사범대학
6. 약학대학 (개정 2011. 2. 28)
7. 미래융합대학 (신설 2018. 3. 13., 2018. 7. 4.)
8. 교양융합대학 (신설 2018. 3. 30.)

② 각 단과대학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7. 2. 23)

③ 각 단과대학에는 행정실을 두되, 생명산업과학대학과 약학대학에는 생명산업과학대학·약학대학 행정실, 사회과학대학과 인문예술대학에는 사회과학대학·인문예술대학 행정실, 공과대학과 사범대학에는 공과대학·사범대학 행정실, 미래융합대학과 교양융합대학에는 미래융합대학·교양융합대학 행정실을 둔다.(개정 2008. 2. 13, 2011. 2. 28, 2017. 2. 23., 2018. 3. 30., 2018. 7. 4., 2019. 3. 25.)

④ 각 행정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각 행정실의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9. 1.)

⑤ 교양융합대학과 미래융합대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30., 개정 2018. 7. 4., 2019. 7. 17.)

제7조(학부·학과) ① 각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학부내에 전공을 둘 수 있다) 및 학과는 별표1과 같다.

② 학부 및 학과에는 그 장으로서 학부장 및 학과장을 두며, 학부내에 전공을 두는 경우에는 전공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학부장과 학과장은 소속 단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부 또는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공 주임교수를 두는 경우에 전공 주임교수는 소속 학부장의 명을 받아 당해 전공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7. 2. 23.)

③ 제1항의 규정과 별도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의 설치된 학부(과)의 교직관련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범대학내에 교직과를 둔다.

제8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학부·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 및 연구시설 등에 소속 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02. 15., 2019. 7. 17.)

②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전임교원의 정원을 따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연구시설 등에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연구시설 등에 배정된 전임교원에 대한 근무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02. 15.)

③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교수시간을 감할 수 있다.(개정 2013. 02. 15., 2019. 7. 17.)

제8조의 2(전임교원의 임무) 이 대학교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개정 2019. 7. 17.)

제8조의3(강사의 소속 등)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임용된 교원을 말하며, 강사의 소속 및 교수시간, 임무, 채용, 재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7.]

제9조(비전임교원) 이 대학교에 비전임 교원을 두어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 7. 4, 2012. 8. 29.)

제10조(학생정원) ① 각 단과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입학정원 외의 별도 정원으로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을 두며, 대학원의 학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학원 학칙에 이를 규정한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개정 2008. 2. 13)

②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제1항제2호의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으로 겸보한다.

③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특수대학원 제외)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8. 06)

제3절 부속시설 등

제12조(부속시설 등 설치) 이 대학교에 교육기본시설, 부속시설, 연구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1. 2. 28, 2017. 2. 23.)

제13조(부속시설) ① 이 대학교의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을 두며, 부속시설로 정보전산원·학생생활관·박물관·국제교류교육원·언론사·공동실험실습관·농업과학교육원·대학일자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7. 1. 11, 2009. 12. 21, 2010. 9. 1, 2012. 11. 16, 2014. 4. 29, 2017. 2. 23, 2018. 3. 30., 2018. 7. 4., 2019. 3. 25., 2019. 7. 17.)

② 삭제 <2019. 3. 25.>

③ 이 대학교 각 단과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속시설을 둔다.

1. 생명산업과학대학 : 부속농장·부속학술림·부속동물사육장 (개정 2008. 2. 13)

2. 사회과학대학 : 부속고시원 (신설 2010. 9. 1.)

3. 공과대학 : 부속공장, 공학교육혁신센터(개정 2013. 02. 15.)

4. 사범대학 : 부설교육연수원 (개정 2010. 9. 1.)

5. 교양융합대학 : 교양아카데미아센터 (신설 2018. 3. 30., 개정 2019. 3. 25., 2019. 7. 17.)

6. 미래융합대학 : 평생교육원(신설 2018. 7. 4.)

④ 제3항의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3. 30., 2018. 7. 4.)

⑤ 도서관의 하부조직으로 학술정보과를 두며,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9. 1, 2012. 11. 16, 2019. 3. 25., 2019. 7. 17.)

⑥ 제1항 및 제2항의 부속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2. 23.) [제목 개정 2019. 3. 25.]

제14조 삭제 (2010. 9. 1.)

제14조의 2(연구시설) ① 이 대학교의 연구시설로 연구원 및 연구소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7. 4.)

②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3(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별표3]의 학교기업을 두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협력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4(학생군사교육단) ① 이 대학교에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신설 2014.09.23.)

②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09.23.)

제15조(부속시설 등의 평가) ①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중 별표4에 규정된 시설과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매2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 2. 28, 2012. 11. 16)

② 제1항의 부속시설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대학평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회(개정 2019. 3. 25.)

제1절 대학평의위원회(개정 2019. 3. 25.)

제16조(대학평의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총장 및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순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25.]

제2절 학무회(신설 2019. 3. 25.)

제17조(학무회) ① 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무회를 둔다.(개정 2012. 4. 3)

② 학무회는 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 교육혁신본부장,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대학일자리센터장, 창업지원단장으로 구성하

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개정 2007.07.04, 2012.04.03., 2013.02.15., 2017. 2. 23., 2018. 7. 4., 2019. 7. 17.)

③ 학무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4. 3)

1. 대학원·단과대학, 학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2. 대학원·단과대학간의 업무조정을 요하는 사항
3. 학칙, 그 밖에 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 28)
4.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2. 28)

④ 학무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12. 4. 3)

⑤ 그 밖에 학무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28)(개정 2012. 4. 3)

제3절 교수회(신설 2019. 3. 25.)

제18조(교수회) ① 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 및 단과대학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모든 교수로 구성한다.

③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교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교수평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교수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④ 교수회는 그 대의기구로서 교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교수평의회를 둔다.

⑤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 29)

제19조(단과대학교수회)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해당 대학에 소속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개정 2012. 8. 29)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학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거나 단과대학교수회 구성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2.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상벌 및 장학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 2. 28)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단과대학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전공), 학과장회의 심의로 처리한다.

제4절 위원회

제20조(대학원위원회) ① 이 대학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획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대학인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두되, 대학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및 각 단과대학의 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0% 이상을 여성교수로 한다. (개정 2007. 7. 4, 2011. 12. 30, 2017. 2. 23., 2018. 7. 4.)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제23조(각종위원회) ① 이 대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연한·학년·학기·수업일수 등 (개정 2018. 7. 4.)

제24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의 수업연한은 5년, 약학대학은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교육 2년과 전공교육 4년으로 한다. (개정 2011. 2. 28)

② 3학년에 편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에 편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수업연한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부 학생과 편입학한 학생은 제외한다.

④ 학·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으로 한다. (신설 2013. 8. 06)

제25조(재학연한) ① 학생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삭제 2008. 4. 17, 신설 2008. 8. 21, 개정 2011. 12. 30, 2013. 08. 06)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06)

제26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 7. 4., 2019. 3. 25.)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및 동계 방학중 각 3주 이상 (신설 2019. 3. 25.)
4. 유연학기 : 학기 중 2주 이상 (신설 2019. 3. 25.)

③ 이 대학교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 3. 25.)

④ 제1학기 수업은 3월 첫째주부터 개강하며,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기에 개강할 수 있다(개정 2019. 3. 25.)

⑤ 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체(학교기업 포함)등에서의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실습학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학년 또는 학기와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8. 7. 4.)

제26조의2(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학기수업, 현장실습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함)등의 형태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25.]

제2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을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8. 7. 4.)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1, 2011. 2. 28,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제2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5월 15일)
3. 하기휴가 : 제1학기 수업종료 다음날로부터 8월 말일까지
4. 동기휴가 : 제2학기 수업종료 다음날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업일이라도 강의 또는 실험·실습 과제 등을 과할 수 있다.

제5장 입학(편·재입학 포함)과 등록

제29조(입학시기) 입학허가의 시기는 제1학기 개강일로 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편입학의 시기는 매학기 개강일로 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로 한다.

제30조(입학자격)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 2. 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개정 2011. 2. 28)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11. 2. 28)
3. 그 밖에, 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08. 8. 21, 2011. 2. 28)

제30조의 2(약학대학 입학자격) 약학대학 입학자격은 법령에 따라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 2. 28)

제31조(입학전형) ① 입학지원 절차 및 전형방법은 매 학년도 모집시기마다 따로 정한다.

② 대학입학전형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02. 11, 2015. 3. 3)

③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및 감사 등을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대학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하여 입학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⑤ 입학전형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편입학) ① 대학(교육대학 포함) 2년(4학기)이상 수료한 사람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 대학교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②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이 제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당해 3학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 당해 3학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간호학과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1. 2. 28)

2. 제67조의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연계운영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에서 당해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당해 3학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3, 당해 3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2. 28)

3. 그 밖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입시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외 편입학 모집을 하기로 한 사람.

③ 편입학 모집정원 산출방법 및 그 밖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28)

④ 편입학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 편입학생 모집시마다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제33조(재입학) ① 제적된 사람에게는 재입학 가능여석이 있을 때 퇴학 또는 제적된 모집단위의 제적되기 전의 학년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성적불량에 의해 제적 처분된 사람은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라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19. 3. 25.)

② 재입학 모집정원의 산출방법 등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모집단위의 통·폐합으로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 유사한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야간학부(과)에서 재입학시 주간학부(과)로 전환된 경우 주간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입학허가 및 취소 등)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개정 2011. 2. 28, 2019. 3. 25.)

② 입학전형 결과 합격이 확정된 사람은 지정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19. 3. 25.)

③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9. 3. 25.]

제35조(모집단위간 이동) 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20의 범위안에서 2학년 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간호학과와 모집단위이동은 입학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2018. 3. 13.)

② 모집단위 간 이동의 허가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 간 이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고,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토록 한다. (신설 2008. 2. 13, 개정 2011. 2. 28)

제6장 휴학·복학·자퇴·제적 (개정 2019. 3. 25.)

제37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7. 4. 9, 2011. 2. 28, 2013. 08 .06)

② 신입학 및 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11. 2. 28)(개정 2013. 08 .06)

③ 휴학기간은 통산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로 하고,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 질병 휴학기간, 총장의 추천에 따른 외국대학 유학기간,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한 기간(4학기 이내) 등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8 .06, 2014. 02.

11, 2018. 3. 13.)

④ 휴학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제3항의 허가기간 내에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제38조(복학) ① 휴학한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등록기간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복무 만료로 인한 복학은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2개 학기 등록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해당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② 휴학기간중이라도 등록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39조(자퇴) 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자 연서의 자퇴원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4. 9, 2011. 2. 28, 2019. 3. 25.)

제40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1. 2. 28)
2.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1. 2. 28)
3. 타교에 학적을 둔 사람 (개정 2011. 2. 28)
4.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18. 3. 13.)
5. 사망한 사람 (개정 2011. 2. 28)

제7장 교과와 이수

제41조(교과목 분류) ① 이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교과목·전공교과목·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은 필요에 따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눌 수 있다.

③ 교양교과목의 학점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국책사업 또는 이 대학교의 특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과 다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1주 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1)

제43조(교과이수) ① 이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생명산업과학대학 간호학과,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및 사범대학 학과는 140학점 이상, 약학대학 약학과 전공교육은 160학점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166학점 이상, 재직자 전형에 의해 설립된 학과는 12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 2. 13, 2008. 8. 21, 2011. 2. 28, 2013. 02. 15)

② 교육과정과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은 따로 정하며, 학생은 이 기준에 따라 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일반선택교과목은 전공 학과(부) 또는 전공 이외의 학과(부)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구분별 이수기준 학점을 초과 이수한 학점은 이를 일반선택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을 요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의 학생은 통산 1개월 이상 현장에서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습결과를 졸업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직과정 이수한 사람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이 대학교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하도록 규정된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⑥ 복수전공이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이수 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복수전공을 인정하며, 복수전공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28, 2019. 3. 25.)

⑦ 융합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 승인을 받아 이수 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융합전

공 또는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인정하며, 그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3. 25.)

⑧ 2개 이상의 전공이나 학과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연계전공 이수를 인정하며, 그 이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⑨ 학군사관후보생교육과정(R.O.T.C)의 이수학점은 8학점으로 하고, 이수학점을 일반선택교과목 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⑩ 이 대학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범위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⑪ 공학계열 학과(부, 전공)는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2.)

⑫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군복무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08. 2. 13, 2011. 2. 28, 2014.09.23., 2019.10.14.)

제44조(전공배정) ①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총장은 교육여건 및 학문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 내 전공별 이수인원을 조정 또는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교과목 개설) ① 매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 및 수업시간표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설강기준, 수업시간표 편성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취득학점의 기준) ① 학기당 취득 기준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21)

② 계절 학기에 취득한 학점, 외부시험으로 인정받은 학점 및 성적평가를 하지 않는 교과목 학점은 매학기 취득학점 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을 전산입력하여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수강을 불허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1. 2. 28)

② 복학·재입학·편입학한 사람 및 모집단위간 이동한 사람의 수강신청 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③ 일단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기 초 3주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8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누되,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실시하고, 임시시험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양교과목 또는 공통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의 평가는 공동출제·공동채점을 할 수 있다.

③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제4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학업성취도에 따라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다만, 실점으로 평가하지 않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의 등급은 P·S 또는 F·U로 한다.

(개정 2007. 4. 9, 2008. 8. 21)

등 급	실 점(100점 만점 기준)	평 점
A ⁺	95 - 100점	4.5
A ^o	90 - 94점	4.0
B ⁺	85 - 89점	3.5
B ^o	80 - 84점	3.0
C ⁺	75 - 79점	2.5
C ^o	70 - 74점	2.0
D ⁺	65 - 69점	1.5
D ^o	60 - 64점	1.0
F	60점 미만	0
P·S	급 제	없음
F·U	낙 제	없음

②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시험성적·과제물평가·출석상황·학습태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석상황의 점수반영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매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되거나,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⑤ 이미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의 원 취득성적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7. 4. 9.)

⑥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B^o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o로 한다. (신설 2014. 4. 29)

제49조의 2 (삭제 2014. 4. 29)

제50조(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①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사람과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최저수강신청학점 미만을 수강신청한 사람에게는 학사 경고한다. 다만 일반학과는 8학기, 건축학부는 10학기, 약학과는 12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2. 28, 2011. 12. 30, 2019. 3. 25.)

② 제1항의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소속 단과대학장 및 본인에게 학사경고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1. 2. 28)

③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별지도하고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4. 9, 2011. 2. 28)

④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 (개정 2007. 4. 9, 2011. 2. 28, 2011. 12. 30)

제51조(학점인정) ① 학업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점 인정시기는 당해 학기말로 한다.

② 외부시험으로 인정받은 성적을 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으로 인정된 것은 취소한다.

④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대학교목선이수제 교육기관 포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11. 12. 30)

제52조(편입학생 등의 학점 인정) 편입학한 사람·재입학한 사람,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사람, 부전공 이수한 사람 등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당해 전공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그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점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2. 28)

제53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인 사람은 졸업논문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학과(부) 또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실험실습보고서·실기발표·졸업시험(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을 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②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4조(수료) ①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8. 21, 2011. 2. 28)

수료인정 학년	졸업학점이 120점인 학과	졸업학점이 130점인 학과	졸업학점이 140점인 학과	졸업학점이 160점인 학과	졸업학점이 166점인 학과
1학년	30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	34학점 이상
2학년	60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	67학점 이상
3학년	90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4학년	12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34학점 이상
5학년	-	-	-	120학점 이상	166학점 이상
6학년	-	-	-	160학점 이상	-

②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학년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제55조(졸업과 학위)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고 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별표4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내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2019. 3. 25.)

② 졸업과 학위수여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한다.

③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이수한 부전공을 표시하고, 소정의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학사학위를 표시한다. (개정 2011. 2. 28)

④ 삭제(2005.9.1.)

⑤ 이 대학교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3. 02. 15., 2019. 10. 14.)

⑥ 명예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 02. 15)

제55조의 2(복수학위 취득) ① 이 대학교 학생은 이 대학교와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교(이하 “교류대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상호 인정받아, 이 대학교 및 교류대학교의 졸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 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류대학교 학생이 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이 대학교의 졸업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이 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28)

제56조(조기졸업)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사람 중에서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으로서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학생은 7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단서신설 2014. 02. 11)

제57조(졸업의 취소) 졸업한 사람으로서 착오 또는 부정으로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어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1. 2. 28)

제8장 규율과 상벌

제5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제59조(징계) ① 단과대학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수업 및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정학(무기·유기) 및 제적으로 한다.

③ 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납입금, 장학, 학생활동

제6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다만,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업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2017. 2. 23.)

② 수업연한이 지나 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17. 2. 23.)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개정 2011. 2. 28, 2017. 2. 23.)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개정 2011. 2. 28, 2017. 2. 23.)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11. 2. 28, 2017. 2. 23.)

라. 삭제 (개정 2007. 9. 12.)

마.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07. 9. 12, 2011. 2. 28, 2017. 2. 23.)

바.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개정 2013. 02. 15, 2017. 2. 23., 2019. 3. 25.)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07. 9. 12, 2011. 2. 28, 2017. 2. 23.)

나. 삭제 (개정 2007. 9. 12.)

다. 삭제 (개정 2007. 9. 12.)

라.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07. 9. 12, 2011. 2. 28, 2017. 2. 23.)

③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경제상 납입금의 납입이 곤란한 사람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2017. 2. 23.)

제60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이 대학교에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 2. 28)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2. 28)

제61조(징계학생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학 기간이 1학기를 초과할 때는 그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7. 2. 23.)

제62조(실험실습비의 징수) 실험과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이 과오납된 때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7. 2. 23.)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2.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때 (개정 2011. 2. 28)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때 (개정 2019. 3. 25.)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개정 2011. 2. 28)

5.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개정 2011. 2. 28)

③ 제2항의 반환금은 반환사유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학기개시일은 학기 개강일로 본다. (개정 2007. 7. 12, 2011. 2. 28., 2017. 2. 23., 2019. 3. 25.)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④ 수업연한이 지났어도 등록한 학생에게는 수강 신청학점에 따라 기납입한 등록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2017. 2. 23.)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개정 2011. 2. 28, 2017. 2. 23.)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개정 2011. 2. 28, 2017. 2. 23.)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11. 2. 28, 2017. 2. 23.)

라. 삭제 (개정 2007. 9. 12.)

2. 석사학위 이상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07. 9. 12, 2011. 2. 28, 2017. 2. 23.)

나. 삭제 (개정 2007. 9. 12.)

다. 삭제 (개정 2007. 9. 12.)

⑤ 제4항은 재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⑥ 계절제로 운영되는 교육대학원 등 제3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개정 2007. 9. 12.)

제64조(장학금, 취업지도) ①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28)

② 학생취업 및 진로지도에 원활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3. 25.)

제65조(학생생활지도)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이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생은 수업·연구 등 이 대학교 기본기능 수행 및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학생회의 육성 및 활동지도를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의 학업 및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10장 장애학생 및 정원의외 학생과 공개강좌

제66조(특별생)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학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실력을 평가한 후 정원의외 특별생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이수한 사람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1. 2. 28)

제67조(학술교류 협정의 체결) ① 이 대학교의 학문 연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는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직원·학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으며, 협정대학에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하는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제68조(특별생의 편입학)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때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 할 수 있다.

제69조(학칙준용)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70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그 장의 위탁이 있을 때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위탁생으로 하고 입학고사의 일부를 면제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21, 2011. 2. 28)

제71조(공개강좌) 직무·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배양을 희망하는 사람을 지도 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2. 28)

제72조(공개강좌의 승인) 공개강좌의 과목·제목·시간·수강자격 및 인원·장소, 그 밖의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28)

제73조(수강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학생납입금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의2(계약에 의한 학부·학과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 ① 이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학부·학과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학과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부·학과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부·학과 또는 유사학부·학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학부·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4조(시간제 등록 학생) ① 제30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이 대학교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②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의 등록인원은 정원의외 하며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1. 2. 28)

③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학점의 정규학기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4조 2(명예학생) ① 이 대학교에 일반성인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명예학생을 둘 수 있으며, 명예학생으로서 일정한 수료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② 명예학생의 선발, 수료 절차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의 3(장애학생) ① 이 대학교 입학생 중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 학생의 휴학기간, 전공배정, 납입금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8. 4. 17)

1. (삭제 2008. 4. 17)
2.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휴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장애학생의 최저 수강신청학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장애학생은 지망하는 전공에 배정하되, 전공별 배정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장애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하되, 학점당 납입금은 총 납입 금액을 수강신청 기준학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 권익구제를 위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6. 24)

제11장 자체평가

제74조의 4(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9. 12. 21)

제12장 학칙개정

제75조(개정안 발의) 학칙 개정안은 총장, 교수평의회 또는 재적교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한다.

제76조(개정안 공고) 발의된 개정안은 심의 이전 5일 이상 공고되어야 한다.

제77조(개정안 심의·공포) ① 개정안은 교수회에서 심의한 후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다만,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 평의회에서 심의한 후,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개정 2019. 3. 25.)

② 총장은 전항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10일 이내에 확정·공포한다.

제13장 보 칙

제78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79조(미래융합대학의 교육과정 운영등의 특례) 제4장 수업연한·학년·학기·수업일수 등, 제5장 입학(편·재입학 포함)과 등록, 제6장 휴학·복학·퇴학·제적, 제7장 교과와 이수, 제9장 납입금·장학·학생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미래융합대학의 교학행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3. 13., 2018. 7. 4.)

제80조(처·국·과 등 조직에 관한 특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1항의 산학연구지원과는 본부로 본다.(개정 2018. 7. 4.)

제81조 삭제 <2019. 7.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2학년도에 모집단위가 개편된 경우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

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4학년도까지는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에 소속된 것으로 보며, 2005학년도부터는 학생이 선택·배정받은 전공에 따라 변경된 모집단위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2001학년도(변경전) 모집단위	2002학년도(변경후) 모집단위
공과대학 토목건축환경공학부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부
	공과대학 건축학부

제3조(조직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본부 과·담당관 중 수업과와 학적과의 소관사무는 학사관리과에서, 학생과 및 보건진료소와 장학담당관 소관 사무 중 근로장학생 운영, 장학금 및 학자금관리, 학생 해외유학 및 연수는 학생지원과에서, 후생과와 장학담당관 소관사무중 학생 부업알선 및 취업지도, 학생종합서비스센터 지원관리는 취업복지과에서, 기획담당관의 소관사무는 기획평가과에서, 연구지원담당관의 소관사무는 연구지원과에서 각각 승계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자연과학대학행정실과 사범대학행정실의 소관사무는 자연과학대학·사범대학 행정실에서, 대학원행정실의 소관사무는 교무과에서 각각 승계한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부속시설인 학생생활연구소의 소관사무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전자계산소의 소관 사무는 정보전산원에서, 학생기숙사의 소관사무는 학생생활관에서, 도서관 수서과·열람과·정리과의 소관 사무는 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과에서 각각 승계한다.

제4조(조직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본부의 수업과와 학적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은 학사관리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으로, 학생과와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은 학생지원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으로, 후생과와 장학 담당관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은 취업복지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으로, 기획담당관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은 기획평가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으로, 연구지원담당관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은 연구지원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자연과학대학행정실과 사범대학행정실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은 자연과학대학·사범대학행정실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으로, 대학원행정실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은 교무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부속시설인 학생생활연구소, 전자계산소, 학생기숙사 소속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은 각각 학생상담센터, 정보전산원, 학생생활관 소속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으로, 도서관 수서과·열람과·정리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은 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으로 본다.

부 칙(2002. 8. 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3조제3항의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6)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별표1 및 제10조 제1항의 별표2의 개정규정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중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제55조 제1항의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2004학년도 모집단위 개편에 따라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에 소속된 것으로 보며, 2007학년도부터는 학생이 배정 받은 전공에 따라 변경된 모집단위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2003학년도 모집단위(변경전)	2004학년도 모집단위(변경후)
동물자원·산업기계공학부	동물자원과학과
	산업기계공학과

제3조(부속시설 명칭 변경 및 그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과의 소관사무는 도서관의 학술정보과에서 승계하며,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은 도서관 학술정보과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으로 본다.

제4조(산학협력단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학협력원 소관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며, 산학협력원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은 산학협력단 소속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04. 2. 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1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별표 1, 제10조 제1항 별표 2 및 제55조 제1항 별표4의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명칭이 변경된 학부 및 전공에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7학년도까지는 변경 이전의 학부 및 전공에 소속된 것으로 보며,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변경된 학부 및 전공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2004학년도 (변경전) 학부, 전공명	2005학년도 (변경후) 학부, 전공명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농업과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환경과학부
생물환경화학전공	생물환경전공
응용생물학전공	식물의학전공

부 칙 (2005. 1. 5.)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모집단위별 입학정원)와 별표 4(학위 종별 내역)의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졸업인증 요건 신설)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의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5학년도 입학자와 같은 교육과정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74조의 3(장애학생)의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2004학년도 제2학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3.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인력개발센터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학생지원과 업무중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교육,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업무와 취업장학과 업무중 학생 취업 지도, 학생부업 알선, 학생생활관·고시원 지원, 학생회관 관리 업무와 학생상담센터 소관 사무는 종합인력개발센터에 승계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취업장학과 업무 중, 장학금 조성 및 관리, 장학위원회 운영, 학자금 융자 업무, 봉사장학생 운영,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등은 학생지원과 소관사무로 승계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학생상담센터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5. 9.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0.)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학생 소속의 변경운영)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통상학부 사이버무역학전공(야간 포함)에 재적중인 학생은 무역학전공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패션디자인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기계자동차공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기계자동차공학부 학생이 기계우주항공공학부로 소속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2006. 9. 1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명칭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학생 소속의 변경운영) 이 학칙 시행 당시 신소재응용공학부의 재료금속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나노·신소재응용공학부의 나노·재료시스템공학전공, 나노·고분자공학전공, 나노·화공시스템공학전공에, 정보통신공학부의 컴퓨터과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공학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 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별표2(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제5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6항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2. 13.)

- ① (시행일)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명칭 변경에 따른 학생 소속의 변경운영) 이 학칙 시행 당시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식품과학부, 한약자원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산업과학대학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회계학부, 경영통상학부, 법정학부 및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에,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학부, 동양어문학부, 문예창작학과, 사회체육학과, 피아노학과, 만화예술학과, 사진예술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및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인문예술대학에,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화학전공, 물리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 ③ (학부(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학생 소속의 변경운영) 이 학칙 시행당시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환경과학부 생물환경전공,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생명과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산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환경학전공, 생물학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인문사회과학대학 만화예술학과,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 패션디자인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인문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만화예술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인문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패션디자인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학칙 시행당시 나노·신소재응용공학부 나노·재료시스템공학전공, 나노·고분자공학전공, 나노·화공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나노·신소재응용공학부 미래전략신소재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 ④ (모집단위내 전공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식물생산과학부 생명자원학전공, 자원식물개발학전공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10학년도 까지는 변경 전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11학년도 부터는 바이오자원학부 웰빙자원학전공, 자원식물개발학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 ⑤ (모집단위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중어중문학과, 일본어일본문화학과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 ⑥ (모집단위 및 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식물생산과학부 원예학전공, 생명환경과학부 식물의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0학년도 까지는 변경 전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11학년도부터는 원예·식물의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학칙 시행당시 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제어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0학년도 까지는 변경 전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11학년도부터는 정보통신공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학칙 시행당시 기초과학부 화학전공, 물리학전공, 환경교육과, 과학교육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0학년도 까지는 변경 전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11학년도부터는 기초과학부 화학전공, 물리학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기초의·화학부에, 환경교육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과학·환경교육학부 환경교육 전공에, 과학교육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물리교육전공 또는 화학교육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⑦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야간)·일어일문학전공(야간), 법정학부 행정학전공(야간), 경영통상학부 무역학전공(야간)에 재적하는 학생은 2010학년도 까지는 변경 전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11학년도부터는 중어중문학과, 일본어일본문화학과, 법정학부 행정학전공, 경영통상학부 무역학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4. 17.)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4조제1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명칭 변경에 따른 학생 소속의 변경운영) 이전 학칙 시행으로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에서 사회복지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2010학년도까지는 사회복지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11학년도부터는 사회복지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2. 11.)

① (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조리과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조리과학과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회계학부 경제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영통상학부 경영학전공, 무역학전공, 물류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물류학과에, 인문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만화예술학전공, 패션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인문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패션디자인학과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나노·신소재응용공학부 미래전략신소재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고분자공학과, 화학공학과에 사범대학 과학·환경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환경교육과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③ (트랙명칭) 트랙명은 학부 교수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09. 3. 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기획협력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평가과”를, “기획협력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평가과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2. 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명산업과학대학 바이오자원학부 웰빙자원학전공, 자원식물개발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산업과학대학 웰빙자원학과, 자원식물개발학과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학전공, 조경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조경학과에, 생명산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원예학 전공, 생명환경과학부 식물의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산업과학대학 원예학과, 식물의학과에 생명산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생물환경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산업과학대학 생물학과, 생물환경학과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법학전공, 행정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행정학과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제어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전기제어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 ③ (트랙제학부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명산업과학대학 원예·식물의학부,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2학년도까지는 변경전 모집단위에 속한 것으로 보며, 2013학년도부터 생명산업과학대학 원예·식물의학부 학생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원예학과 또는 식물의학과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부 학생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기제어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로 각각 전공 배정 하여야 한다.

부 칙(2010. 2.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과 소관 사무는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과에서, 어학원 소관 사무는 국제교류어학원에서, 고시원 소관 사무는 사회과학대학 부속고시원에서,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원연수원의 소관 사무는 사범대학 부설교육연수원에서 각각 승계한다.

부 칙(2011. 2. 28.)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6호 및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의 별표 1, 제10조제1항의 별표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1항의 별표 5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명산업과학대학 한약자원학과, 자원식물개발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2013학년도까지는 변경전 모집단위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보며, 2014학년도부터는 한약자원개발학과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 ③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과학교육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교육과 학생이 물리교육과 또는 화학교육과로

소속변경을 희망 할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부 칙(2011. 6.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별표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기초의·화학부에 재적중인 학생 중 2010학년도 이전에 기초과학부 물리학전공 학생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기초과학부 물리학전공 또는 기초의·화학부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4.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 16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합인력개발센터 인력개발지원담당관 소관 사무는 취업지원과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 소관 사무는 기초교육원에서, 영농교육원과 IT기반첨단농업센터 소관 사무는 농업과학교육원에서 각각 승계한다.

부 칙(2013. 02.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별표2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08. 0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2. 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6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순천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명을 순천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로 하고 규정 중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입학전형위원회로 한다.

② 순천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의 “순천대학교 학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순천대학교학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4. 9.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별표 1, 제10조제1항의 별표 2, 제55조제1항의 별표 4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과 식품영양학전공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고분자·화학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공, 전자전공,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12.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별표1과 제10조제1항 별표2 및 제55조제1항 별표4의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조경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전공, 조경전공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무역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무역학전공,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제회계학부 경제학전공, 회계학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③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자유전공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폐지 전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2.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별표1과 제10조 제1항의 별표2의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사무국 경리과 소관 사무는 사무국 재무과에서, 공과대학 행정실과 사범대학 행정실의 소관 사무는 공과대학·사범대학 행정실에서 각각 승계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사무국 경리과 소속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은 사무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으로, 공과대학 행정실과 사범대학 행정실 소속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은 공과대학·사범대학 행정실 소속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으로 본다.

제3조(모집단위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공, 전자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학생처, 학생처장, 경리과, 경리과장, 공과대학 행정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 공과대학 행정실장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입학학생처, 입학학생처장, 재무과, 재무과장, 공과대학·사범대학 행정실, 공과대학·사범대학 행정실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등록과 납입금) 제목 및 본문 중“납입금”을“등록금”으로 한다.

② 순천대학교 정보전산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정) 본문 중 “국고외에 기성회비”를 “대학회계”로 한다.

③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정) 본문 중 “국비, 기성회비”를 “대학회계”로 한다.

④ 순천대학교 인력개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정) 본문 중 “일반회계,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한다.

⑤ 순천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정) 본문 중 “국비, 기성회비”를 “대학회계”로 한다.

⑥ 순천대학교 언론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정) 본문 중 “기성회비”를 “대학회계”로 한다.

⑦ 순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정) 본문 중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한다.

⑧ 순천대학교 공과대학부속공장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경비) 본문 중 “국비”를 “대학회계”로 한다.

- ⑨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설교육연수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원 등) 본문 중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한다.
- ⑩ 순천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정) 본문 중 “국비, 기성회비”를 “대학회계”로 한다.
- ⑪ 순천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보수 및 재원 등) 본문 중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한다.
- ⑫ 순천대학교 공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공간사용료의 징수 및 활용) 본문 중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한다.
- ⑬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정) 본문 중 “국비,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한다.
- ⑭ 순천대학교 공과대학공동실험실습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경비) 본문 중 “국비”를 “대학회계”로 한다.

부 칙(2017. 6. 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4.)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별표 1, 제10조제1항의 별표 2, 제55조제1항의 별표 4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예술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철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인문예술대학 사학과, 철학과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3. 13.)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별표 2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7호,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 본문 중 “제12조(부속시설 등 설치)”를 “제5조의9(인권센터)”로 한다.

부 칙(2018. 3. 30.)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 개정)**
 - ①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무처장”을 “교양융합대학장”으로 한다.
 - ② 순천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양기초교육원장”을 각각 “교양융합대학장”으로 한다.

- ③ 순천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양기초교육원장”을 “교양융합대학장”으로, “교양기초교육원 교양아카데미센터장”을 “교양융합대학 의사소통센터장”으로 한다.
- ④ 순천대학교 기초·보호학문진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양기초교육원장”을 “교양융합대학장”으로 한다.
- ⑤ 순천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양기초교육원장”을 “교양융합대학장”으로 한다.
- ⑥ 순천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양기초교육원장”을 “교양융합대학장”으로 한다.
- ⑦ 순천대학교 학사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양기초교육원장”을 삭제한다.
- ⑧ 순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및 제43조제1항 중 “교양기초교육원”을 각각“교양융합대학”으로 한다.
- ⑨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별표4 중 “교양기초교육원”을 ‘교양융합대학’으로 한다.
- ⑩ 순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중 “교양기초교육원”을 “교양융합대학”으로 한다.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2017. 7. 14. 개정학칙 시행으로 인문학부(사학전공, 철학전공)에서 사학과, 철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2020학년도까지는 변경 전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2021학년도부터는 사학과, 철학과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7. 4.)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7호, 제79조의 개정학칙은 2018.7.1.부터 적용하고, 제7조제1항의 별표1과 제55조제1항의 별표4의 개정학칙은 2019.3.1.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입학학생처장”, “입학학생처”,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학생처장”, “학생처”, “입학본부”, “입학지원실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규정」과 「순천대학교 에코힐링융복합센터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9. 3. 25.>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별표 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2조(경과조치)** 생명산업과학대학 산업동물학과(야간)와 정원문화산업학과(야간), 사회과학대학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공과대학 융합산업학과(야간)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으로 소속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 ① 순천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본문 중 “인력개발원장”을“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 ② 순천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본문 중 “인력개발원장”을“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 ③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산학협력실적 인정범위 및 점수) 내용 중 “인력개발원장”을“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 ④ 순천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본문 중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을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 ⑤ 순천대학교 계절학기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업편성) 본문 중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업기간은“4주 이상으로”를 “3주 이상으로”로 한다.

부 칙<2019. 7. 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산학연구지원과장”을“산학협력과장, 연구진흥과장”으로 하고, “13인”을 “15인”으로 한다.

②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산학연구지원과 주무로”를“연구진흥과 감사팀장으로”로 한다.

제21조 중 “산학연구지원과”를“연구진흥과”로 한다.

③ 순천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산학연구지원과장”을“연구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순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학연구지원과”를 “산학협력과”로 한다.

⑤ 순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산학연구지원과”를 “연구진흥과”로 한다.

⑥ 순천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산학연구지원과장”을 “산학협력과장,연구진흥과장”으로 한다.

⑦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5. 발전기금 모금 및 발전지원재단 업무 지원”을 삭제한다.

⑧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규정”을 “순천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규정”으로 하고, 제1조부터 제8조의 본문 중 “국제교류어학원”을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하고, “국제교류어학원장”을 “국제교류교육원장”으로 한다.

⑨ 순천대학교 교양융합대학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교양아카데미아센터, 핵심역량강화센터와”를 “교양아카데미아센터”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각 센터는”을 “센터는”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의 “교양아카데미아센터장, 핵심역량강화센터장”을 “교양아카데미아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별표 1] (개정 2006. 9. 19, 2008. 2. 13, 2008. 8. 21, 2009. 2. 11, 2009. 12. 21, 2011. 2. 28, 2013. 02. 15, 2014. 09. 23, 2015. 10. 15, 2017. 2. 23, 2017. 7. 14, 2018. 7. 4, 2019. 3. 25)

단과대학에 두는 학부·학과 및 전공

대 학 명	학부(과)명	전 공 명	트 랙 명
생명산업과학대학	웰빙자원학과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전공 조경전공	
	동물자원과학과		
	원예학과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산업기계공학과		
	농업경제학과		
	생물환경학과		
	식물의학과		
	생물학과		
	조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간호학과		
	산업동물학과(야간)**		
	정원문화산업학과(야간)**		
	2개학부 13개학과	4개전공	

대 학 명	학부(과)명	전 공 명	트 랙 명
사회과학대학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무역학전공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제회계학부	경제학전공 회계학전공	
	물류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소비자학전공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4개학부 2개학과	6개전공	
인문예술대학	사학과		
	철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어일본문화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체육학과		
	피아노학과		
	사진예술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패션디자인학과		
11개학과			

대학명	학부(과)명	전공명	트랙명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학부		
	기계우주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우주항공공학전공	
	신소재공학과		
	고분자·화학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		
	기초의·화학부*		화학전공 기초의과학전공
	융합산업학과(야간)**		
	6개 학부 5개 학과	8개 전공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농업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환경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9개 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1개 학과		
미래융합대학	산업동물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사회서비스상담학과		
	물류비즈니스학과		
	융합산업학과		
5개 학과			
총 계	12개 학부 46개 학과	18개 전공	

(*) 로 표시된 학부는 트랙제 학부임

(**)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존치

[제10조 제1항의 별표 2] (개정 2007. 4. 9, 2008. 2. 13, 2008. 8. 21, 2009. 2. 11, 2009. 12. 21, 2011. 2. 28, 2011. 12. 30, 2013. 2. 15, 2013. 8. 06, 2014. 09. 23, 2015.10.15., 2017. 2. 23., 2017. 7. 14., 2018. 3. 13., 2018. 7. 4., 2019. 7. 17.)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학	모집단위 및 개설학과(전공)		연도별 입학정원 및 편제정원					비고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편제정원	
순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	-	-	-	-	-	
	소 계		-	-	-	-	-	
생명산업과학대학	웰빙자원학과		20	20	20	20	80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전공, 조경전공)		61	61	61	64	247	
	동물자원과학과		21	21	21	24	87	
	원예학과		25	25	25	25	100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70	70	70	70	280	
	산업기계공학과		20	20	20	20	80	
	농업경제학과		23	23	23	23	92	
	생물환경학과		21	21	21	21	84	
	식물의학과		21	21	21	21	84	
	생물학과		27	27	27	27	108	
	조리과학과		28	28	28	28	112	
	한약자원개발학과		40	40	40	40	160	
	간호학과		60	60	60	60	240	
	산업동물학과(야간)		-	-	5	-	5	
	정원문화산업학과(야간)		-	-	5	-	5	
소 계		437	437	447	443	1,764		

대학	모집단위 및 개설학과(전공)	연도별 입학정원 및 편제정원					비고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편제정원	
사 회 과 학 대 학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무역학전공)	70	70	70	70	280	
	경영학과	-	-	-	-	0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행정학전공)	89	89	89	89	356	
	법학과	-	-	-	-	0	
	경제회계학부 (경제학전공, 회계학전공)	64	64	64	64	256	
	회계학과	-	-	-	-	0	
	경제학과	-	-	-	-	0	
	무역학과	-	-	-	-	0	
	행정학과	-	-	-	-	0	
	물류학과	23	23	23	23	92	
	사회복지학부	35	35	40	40	150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	-	5	5	10	
	소 계	281	281	291	291	1,144	
	인 문 예 술 대 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철학전공)	-	-	-	48	48
사학과		22	22	22	-	66	
철학과		22	22	22	-	66	
중어중문학과		32	32	32	32	128	
일본어일본문화학과		30	30	30	30	120	
문예창작학과		23	23	23	23	92	
사회체육학과		24	24	24	24	96	
피아노학과		23	23	23	23	92	
사진예술학과		21	21	21	21	84	
영상디자인학과		20	20	20	20	80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4	24	24	24	96	
패션디자인학과		24	24	24	24	96	
소 계	265	265	265	269	1,064		

대학	모집단위 및 개설학과(전공)	연도별 입학정원 및 편제정원					비고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편제정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27	27	27	27	108	
	환경공학과	30	30	30	30	120	
	건축학부	27	27	27	27	*138	5년제 (16:30)
	기계우주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우주항공공학전공)	58	58	58	58	232	
	신소재공학과	26	26	26	26	104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	-	-	-	-	
	고분자·화학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66	66	66	66	264	
	고분자공학과	-	-	-	-	-	
	화학공학과	-	-	-	-	-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70	70	70	70	280	
	전기제어공학과	-	-	-	-	-	
	전자공학과	-	-	-	-	-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70	70	70	70	280	
	정보통신공학과	-	-	-	-	-	
	컴퓨터공학과	28	28	28	28	112	
	멀티미디어공학과	-	-	-	-	-	
	기초의·화학부	28	28	28	28	112	
	융합산업학과(야간)	-	-	5	5	10	
소 계	430	430	435	435	1,760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	19	19	19	76	
	영어교육과	20	20	20	20	80	
	사회교육과	20	20	20	20	80	
	농업교육과	19	19	19	19	76	
	수학교육과	19	19	19	19	76	
	컴퓨터교육과	19	19	19	19	76	
	환경교육과	14	14	14	14	56	
	물리교육과	10	10	10	10	40	
	화학교육과	10	10	10	10	40	
소 계	150	150	150	150	600		
약학대학	약학과	30	30	30	30	120	
	소 계	30	30	30	30	120	
미래융합대학	산업동물학과	5	5	-	-	10	
	정원문화산업학과	5	5	-	-	10	
	사회서비스상담학과	5	5	-	-	10	
	물류비즈니스학과	5	5	-	-	10	
	융합산업학과	5	5	-	-	10	
	소 계	25	25	-	-	50	
합 계	1,618	1,618	1,618	1,618	*6,502		

※ (야간)은 야간학과임

[제14조의 3 제1항의 별표 3] (개정 2014. 12. 24, 2018. 3. 13.),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소재지

학 교 기업명	관련학과 (부, 전공)	사업 코드	사업 종목	소재지
순천대 그린축산	동물자원 과학과	A0142 C10501 O12201 C108 C1012	축산관련서비스업 액상사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축산업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제조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내
MJ&D	민화애니메이션학과 문예창작학과 사진예술학과 영상디자인학과 피아노학과	J59112 C18129 J5819 M73203 M73302 R9019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물제작업 기타인쇄관련산업 기타인쇄출판업 시각디자인업 상업용사진촬영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제15조제1항의 별표 4] (개정 2014. 4. 29, 2018. 3. 30., 2019. 3. 25.)

운영실적 평가 대상 부속시설 등의 범위

구 분	부속시설 등의 명칭
부속시설	공동실험실습관, 생명산업과학대학 부속농장 · 부속학술림 · 부속동물사육장, 사회과학대학 부속고시원, 공과대학 부속공장,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시설	연구소

[제55조 제1항의 별표 4] (개정 2007. 9. 12, 2008. 2. 13, 2008. 8. 21, 2009. 2. 11, 2009. 12. 21, 2011. 12. 30, 2013. 02. 15, 2014. 2. 11, 2014. 09. 23, 2014.12.24., 2015.10.15., 2017. 2. 23., 2017. 6. 13., 2017. 7. 14., 2018 7. 4., 2019. 7. 17.)

학 위 종 별 내 역

대 학	모 집 단 위	수여학위
생명산업 과학대학	웰빙자원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원예학과, 식물의학과, 산림자원·조경학부, 산업동물학과(야간), 정원문화산업학과(야간)	농 학 사
	산업기계공학과	공 학 사
	생물환경학과, 생물학과, 조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식품과학부	이 학 사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사 회 과학대학	경상학부(경영학전공), 경제회계학부(회계학전공), 물류학과,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경영학사
	공공인재학부(법학전공)	법 학 사
	경제회계학부(경제학전공)	경제학사
	경상학부(무역학전공)	무역학사
	공공인재학부(행정학전공)	행정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사 소비자학사
인 문 예술대학	사학과, 철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어일본문화학과, 문예창작학과	문 학 사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사
	피아노학과	음악학사
	사진예술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미술학사
	패션디자인학과	의류학사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우주항공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융합산업학과(야간), 신소재공학과, 고분자·화학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공 학 사
	기초의·화학부	이 학 사
	건축학부	건축학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문 학 사
	농업교육과	농 학 사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환경교육과, 과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이 학 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 학 사
미래융합대학	산업동물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농 학 사
	물류비즈니스학과	경영학사
	융합산업학과	공 학 사
	사회서비스상담학과	사회복지학사 소비자학사

대 학	모 집 단 위	수여학위
연계전공	영미문화, 통합사회	문 학 사
	유전공학	이 학 사
	공통과학	이 학 사
	일본비즈니스전공, 경제특구비즈니스전공, 글로벌창업전공	경영학사
	증권금융전공	경제학사
	영농창업마케팅전공	경제학사
	친환경시설원예전공	농학사
	친환경축산창업전공	친환경 축산학사
	친환경식량자원학전공	농학사
	스마트식품산업학	이학사
	스마트원예산업학	농학사
	스마트축산학	농학사

제 호

졸업증서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에서 정한 전 과정(○○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대학장 (학위) (성명) (직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총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등록번호

<제54조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료증서

성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 학과(부) 학년
의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순천대학교()대학장 (학위) (성명) (직인)

순천대학교총장 (학위) (성명) (직인)